### 안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

제정 2005. 3. 23 훈령 제461호 일부개정 2005. 9. 9 훈령 제469호 전부개정 2018. 1. 25 훈령 제680호 일부개정 2019. 6. 10 훈령 제696호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21조에 따라 안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운영 및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"안양시청과 그 소속기관"(이하 "공공기관" 이라 한다)이란 안양시청(안양시의회 청사를 포함한다)과「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」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(주차장 운영관리) ① 부설주차장(이하 "주차장"이라 한다)은 주차장이 설치된 해당 기관의 기관장(이하 "관리자"라 한다)이 관리하되, 이를 위탁할 수있다. 이 경우 관리자는 수탁자의 주차장 운영관리에 관하여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관리자는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주차관리원 등별도의 주차장 관리인(이하 "담당자"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③ 관리자는 월정기권 자동차 등록, 주차시간 측정, 주차요금 징수 등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다.
- 제4조(주차요금 징수대상) 주차요금은 1시간을 초과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징수한다. 다만, 제8조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제5조(주차장 운영시간) 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6. 10>
  - 1. 유료: 평일 08:00 ~ 19:00
  - 2. 무료

가. 평일: 19:00 ~ 다음 날 08:00

나.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주차수요, 교통 혼잡 등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,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시간 이외에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③ 주차장의 운영관리 위탁 시 수탁자가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## 제6조(주차요금) ①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6. 10>

- 1. 입차 후 60분 초과 시부터 최초 30분은 500원, 30분 이후 10분 초과 시마 다 300원을 징수한다.
- 2. 주차권을 분실한 경우 등의 사유로 주차요금을 산정할 수 없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입차 당일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으로 한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관리자는 「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별표 1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주차요금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9. 6. 10>
- 제7조(주차권 발행) ① 주차장 이용자에게는 별표 1의 시간주차권을 발행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권을 제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의 월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.
  - 1. 소속공무원(사회복무요원 포함) 자동차: 10,000원
  - 2. 공공기관에 입주한 사회단체 및 청사에 입주 근무하는 임·직원 자동차: 10.000원
  - 3.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, 도·시의원 자동차: 10.000원
  - 4. 공공기관 출입 언론인 자동차: 10.000원
  - ③ 제1항에 따라 월정기권을 발행할 경우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월정기 권 발급대장에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  - ④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월정기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월정기권을 재발급 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차장 이용자가 정기권 제조에 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8조(주차요금 면제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6. 10>
  - 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

- 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
- 2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운전한 자동차
- 3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운전한 자동차
- 4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,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이 운전한 자동차
- 5. 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5·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운전한 자동차
- 6. 「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 가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
- 7. 「안양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」제6조에 따라 안양시장이 교 부한 유공납세자증이나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하고 운전한 자동차 (발행일부터 1년간 유효)
- 8.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자동차
- 9.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
- 10. 해당 부서의 확인을 받은 민원방문 자동차
- 11. 그 밖에 안양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장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관리자가 주차요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
- 제9조(주차요금 감면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6. 10>
  - 1. 주차요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동승한 자동차: 50퍼센트
  - 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: 50퍼센트
  - 3. 경로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가운전 자동차: 50퍼센트
  - 4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: 50퍼센트
  - 5. 그 밖에 안양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장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등 관리자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
- 제10조(공공기관 행사 자동차의 주차) ① 제8조제8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경우 공공기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부서는 주차장 업무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무료주차시간은 행사 전·후 30분을 추가한 행사소요시간에 한정하며, 행사 이후 주차에 따른 요금은 제6조에 따라 징수한다.
- ③ 관리자는 공공기관의 무료주차 시 별표 3의 무료주차권에 별표 4의 확인인을 날인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무료주차권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교부한다.
- 제11조(주차요금 징수방법) 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해당 주차장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수 있다.
  - 1.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
  - 2. 주차카드를 자동차 창문에 부착하는 방법
  - 3.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
  - ② 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주차요금은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.
  - ③ 월정기권은 주차장 관리부서에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 달의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징수하여 발행한다. 다만, 주차장을 이용하는 달의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.
  - ④ 월정기권의 발행 후 주차장의 사용 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차장의 사용기간 중 자동차의 정비 또는 휴가・출장・인사이동 등 이용자의 사정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주차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
  - ⑤ 월정기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제12조(징수된 요금관리) ① 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요금 일일결산서 를 작성하고, 다음 날 별지 제4호서식의 세외수입고지서로 안양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신용카드 등 현금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의 결제대행업체에서 지체 없이 안양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주차장 관리) 관리자가「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은 별표 5와 같다.
- 제14조(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)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준수하여야 할 사

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금지한다.
- 2.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, 위험물질의 반입을 금지한다.
- 3. 주차장에 출입하는 자동차는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주차장 이용금지)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.
  - 1.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
  - 2.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자동차
  - 3.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동차
  - 4.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는 자동차
  - 5.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전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
  - 6. 그 밖에 관리자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제16조(방치자동차 조치) ①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방치자동차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.
  - ② 자동차소유주가 이동된 자동차를 찾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, 견인료 및 보관료 등을 견인보관소의 관리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  - ③ 방치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은 사후 정산한다.
- 제17조(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) ① 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의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의 자동차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여야한다.
  - ② 주차장 이용 시 자동차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며, 자동차 내 물품 도난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부칙 <2018. 1. 25 훈령 제680호 전부개정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6. 10 훈령 제696호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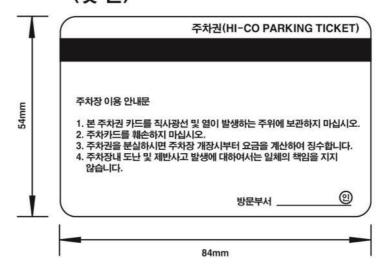
이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[별표 1]

### 시 간 주 차 권(제7조제1항 관련)



# (뒷 면)



#### [별표 2]

# 월 정 기 권(제7조제2항 관련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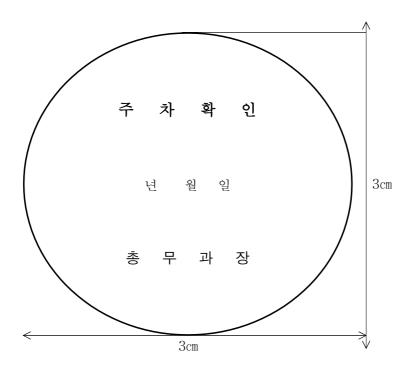
### [별표 3]

# <u>무 료 주 차 권</u>(제10조제3항 관련)

무 료 주 차 권
□ 발급번호:
□ 행 사 명:
□ 행사주관부서:
□ 무료주차일시: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
※ 무료주차시간 초과 시에는 시간요금이 징수됩니다.
□ 그 밖에 유의사항
○ 본 무료주차권은 발급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서만 사
용할 수 있습니다. (무료주차권을 분실하였을 경우 시간요금이 징수
됩니다.)
○ 출차 시에는 시간주차권과 무료주차권을 주차관리요원에게 제출하시
기 바랍니다.
발행일시 년 월 일
안 양 시 장

#### [별표 4]

# <u>확</u> 인 인(제10조제3항 관련)



[별표 5] <개정 2019. 6. 10>

####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(제13조 관련)

## 안양시청 주차장 이용안내문 □ 운영시간 : 평일 08:00~19:00(토요일, 일요일 및 공휴일은 무료 개방) □ 주차요금 입차 후 1시간 이후 30분 초과 시 비고 1시간 이내 최초 30분까지 매 10분당 초과 시 10분 미만은 무료 500원 300원 10분으로 간주 □ 요금징수방법 ○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자동차번호가 자동인식되며, 나갈 때 주차시간을 측정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합니다. ○ 입차 후 1시간 이내에 출차하는 자동차는 요금을 면제하며, 주차권 분실 및 훼손 또는 주차장 운영시간 전 입차 등으로 주차시간 및 요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시작 시간부터 주차요금을 산정하여 징수합니다. □ 방치자동차에 대한 조치 ○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한 경우 견인보관소로 이동· 보관하며, 이 경우 주차요금, 견인료와 보관료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 □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○ 자동차관리 및 자동차 내 귀중품 등 물품도난 책임은 이용자 책임 입니다. ○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 시설물 또는 다른 자동차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인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. ※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총무과 총무팀(☎8045-5512)

시

장

양

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

#### [별지 제1호서식]

# 월 정 기 권 발 급 대 장

۸ul	, ,	7) 7	al H		人小	비그이키		결	재		
순번	소 속	식급	성 병	자동차번호	· · ·	발급일사	담당자	팀	장	과	장
											_

#### [별지 제2호서식]

# 무 료 주 차 권 발 급 대 장

الدخا	,1	1	자동차	,) o	<b>入っ</b>	11 7 A) -)	해당부서		결	재		
순번	성	벙	자동차 번호	사 ㅠ	수당	발급일자	해당부서 (담당자)	담당자	팀	장	과	장
												_

#### [별지 제3호서식]

# 주 차 요 금 일 일 결 산 서

□ 일 ㅈ	<b>-</b> :	년	월 '	일		결 -	담당자	팀	장	과	장
□ 주차요금 수납현황											
		징	수	차	량			면 제	차	량	
구 분	소	계	시간측	주차권	월정기	주차권	계	민육		무	
	대 수	금 액	대수	금액	대수	금액		(1시간	이내)	주키	<b>하권</b>
일 계											
누 계											

# □ 인계인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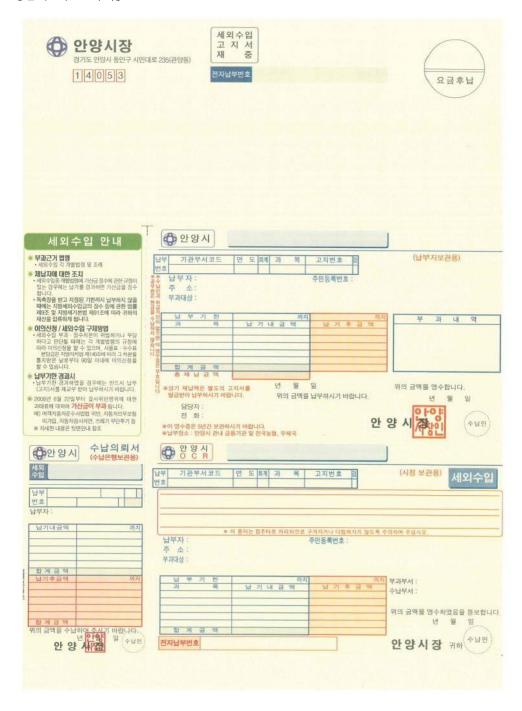
구	분	수납된 주차요	요금	인 계 자	인 수 자
일	계	매	원		
00:00 - 14:00	후 문 정산소	매	원	(인)	(인)
08:00~14:00	민원실 정산소	매	원	(인)	(인)
14:00 00:00	후 문 정산소	매	원	(인)	(인)
14:00~20:00	민원실 정산소	매	원	(인)	(인)

#### □ 방치자동차 이동

차량번호	입 차 시 간	이 동 일 시	주 차 요 금	이 동 장 소 (연 락 처)

#### 안양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

#### [별지 제4호서식]



[별지 제5호서식]

#### 방 치 자 동 차 조 치 보 고

(NO: )

차 량 번 호:

들 어온시간: 년 월 일 ( 시 분) 48시간 경과시점: 년 월 일 ( 시 분)

위 자동차는 48시간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견인사무소로 이동시키고자 합니다.

주 차 영 수 증 첨 부 란

년 월 일

결	담당자	팀	장	과	장
재					

----- 절 ------ 취 ------ 선 -----

(NO: )

#### 이 동 의 뢰 서

아래 자동차는 안양시 부설주차장 내에서 48시간 이상 무단방치 하였으므로 귀 견인사무소에 이동·보관을 의뢰합니다.

자동차 번 호:

들 어 온 시 간: 년 월 일 ( 시 분) 이 동 의 뢰 시 간: 년 월 일 ( 시 분)

받아야할 주차요금: 워

안 양 시 장 (직인)